

세부사업명	농업자금 이차보전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곤충사육시설현대화)					융자금 (백만원)		1,500	
사업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곤충산업 사육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지원액 기준)(용자, 자부담 포함)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용자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용 자	3,000	3,000	3,000	3,000	1,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윤재돈 강훈구		044-201-2472 044-201-2473		
자치단체		사군구 곤충담당 부서							
신청시기	'22. 12월 ~				사업시행기관		지자체(시·군·구)		

1.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신고된 곤충 중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중에 대한 지원도 가능
 - * 각 생산자는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는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 다만,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후 조건부 지원 가능(단, 사업 완료 후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환수)
 -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사육관련 교육

3.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시설·설비(신축 또는 개보수)과 기자재 구비(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축 및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 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사육사: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사료 발효장: 곤충 먹이원 생산·발효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융자 80%(이자보전,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6.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 기준 및 규격(I,II),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수혜 사업자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사업을 조건부로 지원받은 사업자(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신규 진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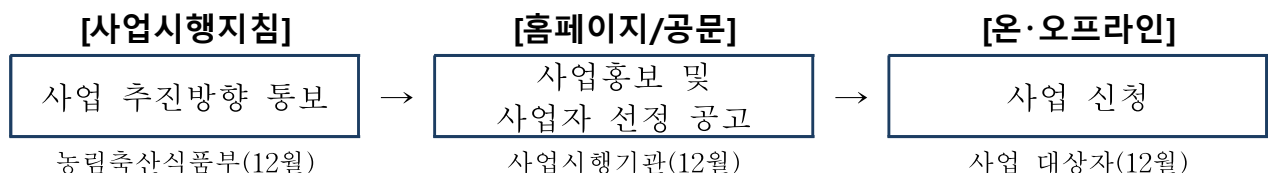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지원 상한액: 3억원(사업비 기준)(용자·자부담 포함)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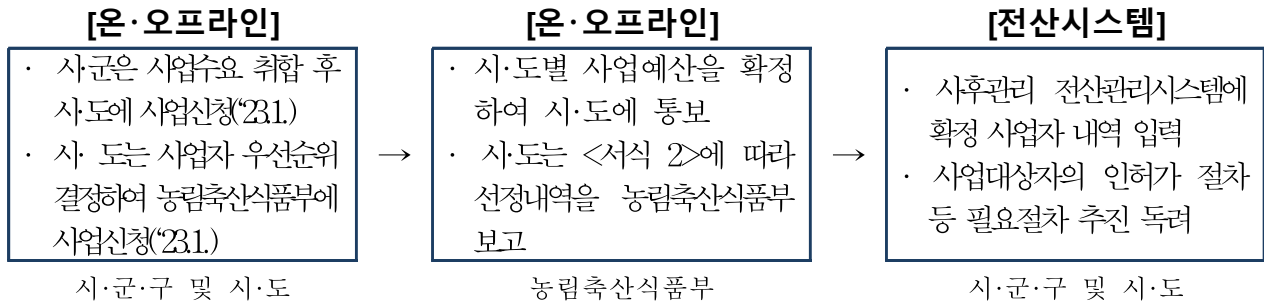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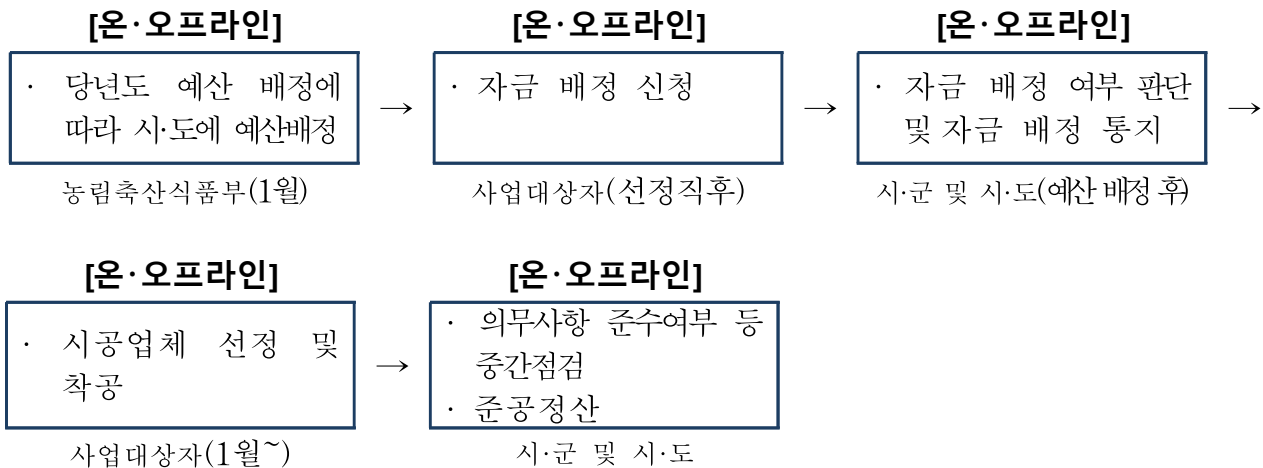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로부터 <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제출받아 보관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 계획에 해당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자 선정 단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평가기준표<별표1>를 기준으로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시·도에 사업신청
- 시·도는 사업대상자 평가기준표<별표1>를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한 사업대상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 사업 수요 및 예산, 2022년 추진실적 등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예산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 각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예산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이 예상되는 경우, <서식4>에 따라 담보설정 예상액에 대한 승인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 예: 곤충사육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 하는 사업대상자가 해당 사육사에 담보설정하여 이 사업에 따른 용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대상자로부터 <서식 3>의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제출받아 보관
- 시·군·구는 사업자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자금 배정 확정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3. 자금 배정 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 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월 초순)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용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시·도 및 시·군·구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용자금을 배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배정 결정 추진
 - * 자금배정 통보 후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4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도 불가피한 사유(인허가 지연 등)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규정 제58조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설계 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기금운용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사후관리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증빙은 통장 송금 등을 통해 직접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업체로부터의 대출인지 등 여부를 사업대상자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견적별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 전문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 장비 구매 시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증빙 유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가 도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자금배정 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배정 통보 이후 지체 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자금 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규정 제58조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 사업대상자(곤충 사육 농업인·농업법인)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4. 사후관리단계

<사업 추진 중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 1회 이상 시·도, 시·군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추진기간 중 사업대상자에 대한 수시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대상자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사업 완료 후 관리>

- 각 시·군·구는 사업을 완료한 사업대상자 중 사후관리 대상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곤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건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도(시·군·구) 및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현지점검 결과, 사업대상자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 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곤충사육시설현대화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양도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통보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통보
- (담보설정) 사업완료 후, 융자금이 지원된 자산의 담보 설정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개별 승인 불필요

1. 사업 점검

- 점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 점검절차 : 시·도 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23. 12월말까지
- 점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2. 환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2024년 사업지침 개선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별표1〉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곤충사육 경력 및 리더십(25)	○곤충사육경력 4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4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3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2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1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1년 미만	25 20 15 10 5 0		*법인의 경우 대표자 *근거: 업신고, 기존 실적 (매출)
② 교육실적 (25)	○곤충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곤충관련 교육 10일 이상 ○곤충관련 교육 7일 이상-10일 미만 ○곤충관련 교육 3일 이상-7일 미만 ○곤충관련 교육 1일 이상-3일 미만 ○해당사항 없음	25 20 15 10 5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표준관리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이수 수료증 등) *법인의 경우 회원 교육실 적의 평균값으로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1일=8시간)
③ 추진 가능성 (25)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사업계획(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인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사업계획(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 (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성이 보통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 (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성이 낮음	25 20 10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④ 판매·유통의 적정(25)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고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높음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고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보통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지 않으나 판매 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높음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유통의 구체성이 보통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유통의 구체성이 낮음	25 20 15 10 5		
소계(100)		100		
가점	○사업내용 중 ICT시설·장비 설치 포함	10		
합계(110)		11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곤충관련 협회, 연구소, 학회, 연구회 등 대표로 활동	○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활동한 자	10		*증명서 제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위반농가	○ 곤충산업육성법, 환경법, 건축법 위반농가	-20		*5년간('18-'23) 대상

□ 총득점 : _____ 점

〈서식 1〉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농업인·농업법인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곤충산업 종사경력	년(주요 곤충 용도:)		
2. 경영현황 (현재)	○ 곤충종류(○표) :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나비, 동애등애, 귀뚜라미, 반딧불이, 꿀벌(화분매개), 거저리, 누에, 기타 곤충 ○ 사육 곤충수(마리) : ○ 사육시설 : 창고(), 철골(), 기타() - 해당란에 ○ 표시 ○ 시설면적 : m ²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개축(), 개보수(), 시설교체()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곤충사육시설 면적 신규대비 : 뒷면에 기재			
	첨부서류 : ①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증 ②농업인확인서(법인의 경우 대표의 농업인확인서) ③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④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⑤신용조사서(대출 시행하는 지역농협, 농협은행에서 발급/ 법인의 경우 대표의 신용조사서) ⑥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⑦사업계획서			
상기와 같이 ○○○○년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1		
		용자	자부담	계
사육사, 저장고				
	소계			
시설장비				
	소계			
합 계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곤충사육시설 면적과 완공 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육마리수)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 후 전체 면적
_____ m ² (_____ 마리수)	_____ m ² (_____ 마리수)	_____ m ² (_____ 마리수)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용자, 이차보전)	_____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m ²)	_____ 천원/m ²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신청

<서식 2>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신청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 · 농장명 ·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 주소(집주소, 농장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 · 활용

4. 제공 받는 자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컨설팅부)
- FTA기금관리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기금관리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화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곤충의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한다.
2.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한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3. 사업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0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조건부 사업 대상자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서식 4〉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담보승인 ‘사전신청 서식’ ③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 별도 하달한 엑셀 서식을 이용할 것

선정년도	시·도	시·군	행정주소	농장명	곤충분류*	사업내역(천원)			대상면적(m2) (사육사와 무관히 기계만 교체하는 경우 제외, 사육사 종물인 경우 포함)			공사분류				공사분류별 금액 (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				주요공사내역	농자매칭건일괄신청	신청액	용자액 이상 신청사유
						총사업비	농자	자부담	총농장부지면적	총사육사부지면적	공사대상사육사면적	사육사 신축	사육사 개보수	사육사 개보수 (종물)	시설 장비	사육사 신축	사육사 개보수	사육사 개보수 (종물)	시설 장비				
																					○		
																					○		
																					○		

- * 곤충 분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재
 -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약용 곤충, 학습·애완곤충, 사료용 곤충, 기타 그밖에 동물

<서식 5>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 (시·군·명) 지원 개요

연도	선정농가수* (정산농가수)	지원액(천원) (선정총액)	지원액(천원) (정산총액)**
2021			
2022			
2023			
합 계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

**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 사업 추진 현황

- * 기 사업완료 된 대상자는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 기록부 작성, 표준사육지침 이행여부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 * 2023년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조치필요사항 기재

○ (사업대상자 명)

- 사업년도, 사업액(융자, 자부담) :
-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지자체 점검 결과 :
-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

〈별표2〉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록

접수일자	지정 번호	발급일자	기관명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갱신	1	2016.08.01	경기도농업기술원	김석철	송성호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83-33	031-229-5856
갱신	3	2016.08.01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정재민	류선미	경남 진주시 대신로 570	055-254-1833
갱신	5	2016.08.01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이상찬	박민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043-201-3924
2016.06.17	6	2016.08.01	대전시농업기술센터	권진호	김예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대정로 97	042-270-6967
2016.06.17	7	2016.08.01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류화석	전지수	전남 고흥군 풍남로 143	061-830-6834
2016.06.17	8	2016.08.01	가톨릭상지대학교	신동철	엄태길	경북 안동시 와룡면 원마길38	054-851-3005
2017.06.07	9	2017.06.0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박홍재	김덕룡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061-330-2792
2017.06.07	10	2017.06.00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신성룡	류한별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063-859-4946
2017.06.07	11	2017.06.00	옥천군농업기술센터	이재창	안광혁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043-730-4924
2017.06.07	12	2017.06.00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김정국	김희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285	051-970-3764
2017.06.07	13	2017.06.00	고구려대학교곤충산업과	김형배	김재근	전남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061-330-7407
2017.09.01	14	2017.11.01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조상대	손희정	서울시 서초구 현인릉 1길 83-9	02-6959-9363
2017.08.25	15	2017.11.01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김현철	황일룡	전북 장수군·읍 와동길 55	063-350-2831
2018.01.25	16	2018.02.12	예천곤충연구소(군조직)	박덕영	최경	경북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고향리 577)	054-650-8271
2018.11.12	17	2018.12.13	안동진명학교	김상우	김봉수	경북 안동시 평화 7길 33	054-854-4301
2018.12.27	19	2018.12.13	송곡대학교	왕덕양	박혜정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송곡대학길 34	033-260-3670
2019.03.11	20	2019.03.11	농업회사법인(주) 휴먼인섹트	김용평	정하송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114-46	031-885-1400
2019.06.07	21	2019.06.07	농업회사법인(주)선우인섹트아카데미	오병인	오병인	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197-2	054-650-5139
2019.07.17	22	2019.07.29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	이희수	박세은	경북 상주시 함창읍 무운로 1621-2(교촌리 244)	054-530-6621
2020.11.16	23	2020.12.03	사)충남곤충산업협회	손진성	손진성	충남 태안군 태안읍 안면대로 208-53	041-672-9928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지원자격 및 요건> ※ 다만,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사육시설을 신축한 다음 용자를 실행하기 전에 곤충업신고를 완료할 것 (곤충업 미신고시 용자실행불가)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사육관련 교육	<지원 대상선정> ※ 다만,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u>사업신청 후 조건부 지원 가능</u> (단, 사업 완료 후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환수)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사육관련 교육	○ 곤충업 신규 진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용자 실행 절차를 개선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u>사업을 조건부로 지원받은 사업자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신규 진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 환수</u>	○ 의무 미이행 시 환수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부정수급 방지
<사후관리단계> 사업 완료 후 관리	<사후관리단계> 사업 완료 후 관리 ○ <u>곤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건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도(사·군·구) 및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u>	
<서식>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 동의서 1.~6. (생략)	<서식>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 동의서 1.~6. (현행과 같음) 7. <u>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조건부 사업 대상자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한다.</u>	○ 조건부 지원을 받은 신규 진입자에게 곤충업 신고 의무 및 미이행 시 자금 회수 관련 내용 재확인